

세계 노인의 권리 강화에 대한 질의응답

Strengthening older persons' rights worldwide

세계노인인권연합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며, 이 사실은 나이가 든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구조 아래 노인은 불평등과 무관심으로 고통받고 있다.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연령차별과 연령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총체적 대응에 대한 압박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이 인권을 향유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기여가 가능하게 되며, 경제 및 인구 위기에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문서는 유엔 노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논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쓰였다.

인권이란? (What are human rights?)

인권이란 국적, 거주지, 성, 연령, 출신국이나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또는 기타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자격과 자유를 말한다.

인권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편적으로, 영속하게 부여된다. 이것은 존엄, 공정, 동등, 존중 및 자율과 같은 핵심 원칙에 근거한다. 인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우리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이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공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공권력으로부터 공정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요청할 근거를 형성한다.

우리는 차별 없이 동등한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 구체적인 도전에 맞닥뜨린다. 일례로, 장애인들이 근로, 교육 및 참여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선결 조건은 주어진 환경에의 접근가능 여부이다.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How are human rights guaranteed?)

인권은 국제조약과 헌법과 같은 법에 따라 표현되고 보장된다. 국제인권법은 정부가 시행해야 할 방향과 삼가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의무를 정하는데, 이는 개인과 그룹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은 국가적 이행을 통해 현지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인권 인식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각국 당사자의 효과적인 집행에 달려있다.

노인의 권리란 무엇인가? (What are older persons' rights?)

모든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제시하기 위해 1948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명시한다. 이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은 다른 모두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동등성은 연

령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권리보장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고자 함이 아니다; 이것은 노인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에 역점이 있다.

왜 새로운 노인권리협약을 논의하는가?

(Why are we talking about a new convention on older persons' rights?)

인권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노인인권의 실질적인 실현은 노인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와 광범위한 차별에 의해 저해된다.

유엔은 현재 모든 연령에서의 동등성을 이루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다. 논의된 선택지 중 하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협약이 노인권리보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다른 그룹의 권리에 대한 유엔협약이 존재하는가?

(Are there UN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other groups?)

아동과 여성 및 장애인은 현재 유엔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¹; 하지만 이러한 조약이 이 그룹에 새롭거나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했다는 뜻은 아니다.

¹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위 조약은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인권이 해당 그룹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이 그룹이 인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은 성에 기반한 태도나 관습, 그들의 권리에 대한 차별이나 침해를 허용하는 무기력한 환경 때문에 종종 취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특히,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특별히 취약한 집단인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인권 착취와 침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노인과 연관되는 인권 이슈가 있는가?

(Are there human rights issues that are particularly relevant to older persons?)

인권은 연령과 의존 정도에 따라 변하면 안 되지만, 연금,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의 접근; 직장의 연령차별로부터의 보호; 상품 및 서비스로의 접근, 돌봄 현장에서의 지원 및 노인 학대로부터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노인의 인권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국제인권기구는 “노년” 이슈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가?

(Is “old age” adequately address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된 조약 중 이주 노동자에 관한 조약만이 연령차별을 명백하게 언급한다. 연령차별을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은 법과 관습에서 노인을 고려하지 않게 만들고, 보편적 권리가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노인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데 실

패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모든 유엔회원국의 당사자 간 인권 검토 과정(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첫 번째 회기에 만들어진 인권이사회의 21,353 권고사항 중 31건만 “어르신”들이나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했다².

유엔협약이란? (What is a UN convention?)

유엔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회원국이 협약을 비준하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독립 전문가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독립 전문가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조약을 어 떠한 방식으로 이행하는지 검토하고 조사하며 권고한다.

협약은 회원국에 정책적 틀과 법적 틀 및 시행지침을 제공한다. 하지만 협약 시행에는 첫째로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의무사항의 불응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으므로 의무를 준수하려는 회원국의 지지와 의지가 요구된다.

새로운 유엔협약이 필요한가? (Is there a need for a new convention?)

노인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현존하는 인권 조약 아래 이미 보호를 받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정부에 법적 의무를 지우는 국제인권법 아래에서는 명시적 인정을 받고 있지 않다.

실제 노인의 권리는 자주 등한시되며 완전히 부정될 때도 있다. 이러한 예는 구체적으로 만

² 2012년 7월에 접속한 UPR-info(<http://www.upr-info.org/database>)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단어 검색 및 분석.

성빈곤, 폭력과 학대, 양질의 돌봄을 받기 어려움, 존엄과 자율에의 무시, 교육과 취미에 관한
기회의 부족, 법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사회와 정치적 참여로부터의 배제 등으로 표출된
다.

현존하는 인권법이 노인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정부 결정권자 개인의 자율규제에 달렸으며
이것은 국내와 국가 간의 큰 차이를 의미한다.

연령차별이 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연령과 함께 성 및 민족 등 다른 이유에 기반
한 다중적 차별을 다루는 것 또한 어렵다. 새로운 협약은 다른 그룹에게 적용된 것과 같이 노
인의 권리가 지켜지는데 일조할 것이다.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이란? (What is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은 2010년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수립된 후 매년 뉴욕에서 모이는 유
엔 회원국,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실무 집단이다.

고령화 실무그룹의 주된 임무는 세계적으로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
그룹의 권한으로는 노인인권에 관련된 현재의 국제적인 체계를 조사하고, 공백을 찾아내어,
새로운 인권법의 가능성을 포함한 가능한 최고의 해결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유엔 총회는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여 노인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에 무
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고려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고령화 실무그룹은 또한 세계 여러 지역의 노인의 권리 향유에 대한 도전에 관해 토의하고, 협약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는 포럼으로서 기능한다.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란?

(What is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노인인권독립전문가는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노인인권독립전문가는 3년의 임기 동안 세계 노인인권에 관해 조사, 감시 및 권고를 수행하며 공개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이 전문가는 노인의 권리를 둘러싼 이해를 통합하며, 노인의 권리 신장 및 보호에 보탬이 되는 조치의 시행을 장려한다.

노인인권독립전문가는 각국에서 진상 파악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발표할 수 있다; 규범과 표본의 지침을 위한 주제 조사를 준비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노인인권독립전문가는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과 긴밀히 협력한다.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이 왜 노인권리협약 논의에 참여하는가?

(Why is the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involved in the discussions about a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2011년에 수립된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은 세계적으로 노인의 요구와 권리를 강화할 필

요에 따라 탄생한 세계적인 조직망이다.

이 연합의 목적은 노인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의 필요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시민 사회 조직의 참여를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과 정책 구조는 생애주기에 따른 노인의 권리를 공정하게 시행하거나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다; 따라서 노인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은 현재의 인권이 노인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유엔 시스템의 일부로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노인권리협약에 추가된 가치는 무엇인가?

(What is the added value of 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새로운 협약은 노인권리의 성격과 그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권리에 대한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고령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도전을 고려하여, 한 문서 안에 노인의 권리에 관해 성문화
- 노년에 대한 만연한 고정관념에 맞서는 반차별도구로서 역할
- 감시과정을 보강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척도 및 기타 지원 방법 개발을 정부에 촉구
- 나이 들에 따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각국의 현재 인권 의무사항을 재고하고, 국가의 책임을 개선
-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협력할 때 필요한 명확성과 지침을 생성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가시성 증가
- 나이 들에 관한 인식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고, 정책 변화에 대한 지침을 내리며, 옹호를 위한 근거를 제시
- 노인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의식 제고
- 노인이 기여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으며,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와 환경 생성

이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hat can civil society do to become involved in this debate?)

1)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은 뉴욕에서 모이지만, 유엔에 파견된 각국 대표들은 각국 수도에서 정부의 지침을 받는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의 영역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정부 대표에게 고령화 실무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알림
- 고령화 실무그룹의 활동에 각국 정부가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고령화 실무그룹의 국가 대표단에 포함시킴
- 각국의 수도와 뉴욕에서 정부 대표단에게 노인에 반한 차별과 노인의 권리 침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제기할 문제를 정부 대표와 논의
- 노인의 권리 옹호와 진행되는 논의에 관한 의식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 및 노인단체와 협력
- 노인의 권리에 대해 미디어 관계자와 협력
- 노인의 권리에 대한 차별, 학대 및 기타 침해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에게 알림

- 관계된 자료의 번역과 보급

2) 고령화 실무그룹 과정에 소속 NGO를 파견한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적 지위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요구되지 않는다.

노인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NGO는 고령화 실무그룹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고령화 실무그룹에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션에 참석한다.

각 시민사회단체와 그 네트워크는 고령화 실무그룹의 주요 논의에 토론자로서 기여할 수 있다.

3)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의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권리 협약을 위한 통일된 옹호 목소리에 기여한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ightsofolderpeople.org/>).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 (elee@asemgac.org)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